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2058637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205863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9 선고 2018가합7332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구교실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차행전

변론 종결 2020. 7. 16.

판결 선고 2020. 9. 10.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9. 선고 2018가합7332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의 "송금하였으나 E은 ~ 가지고 있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L 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E은 피고의 대표이사였으므로 피고의 영업상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의 "수금하기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수금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의 주주로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설범식

판사김길량

판사김용민